

내항 유선의 선박관리평가 개선에 관한 연구

유용웅* · 황현호** · † 이윤석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연구소 박사 후 연구원, **부산해양경찰서,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요 약 : 유선은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 등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선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안전관리 부분의 경우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선령기준 초과 유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해양경찰청에서는 노후 유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평가 하고 있으나, 기존의 여객운송사업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따라 내항만을 통항하고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관광등의 유람 목적 등 유선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선의 통항 특성과 일반적인 운영 환경등을 고려하여 유선에 적합한 선령기준 초과 유선의 선박 검사 및 관리평가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핵심용어 : 유선, 도선, 해양경찰청, 선령기준 초과, 선박관리평가,

내항 유선의 선박관리평가 개선에 관한 연구

[2021년도 (사)한국해양학학회 추계학술발표회]

2021.11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석
해양경찰청 황현호
한국해양대학교 유용웅

목차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내 관련 법령 조사
- 선박관리 평가 기준
- 결론

01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 국내 내항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유람선은 관광진흥법상 일반관광유람선업과 크루즈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 크루즈관광은 해운법에 규정된 해상여객운송사업에 해당되며, 그중 내항 (장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으로 통항 '여객선'으로 분류된다.
- 일반관광유람선업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유선 또는 도선'으로 분류되며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내항 여객선은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선 또는 도선은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 여객선과 유선(도선)은 선박의 운항 특성, 목적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두법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기준으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선(도선)의 특성을 반영한 선박관리평가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의 목적

- 국내 내항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선과 유선(도선)의 선박 운항 패턴, 법적 차이점 등을 분석하고, 유선(도선)의 특성에 맞는 선박관리평가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고 검토하였다.
- 향후 유선(도선)에 대한 효율적인 선박검사를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01 연구 배경 및 목적

주요 내용

- 국내 기준 분석
 - 국내법 : 여객운송관련 법령 조사 (법적 차이 조사)
 - 관광진흥법, 해운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여객운송업의 법적 차이 분석
 -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의 법적 차이 분석
 - 유선(도선) 관련 법령조사
- 유선(도선) 현황조사
 - 유선(도선)의 현황 조사 (선박 규모 등)
 - 유선(도선)의 운항 특성 조사

† 교신저자 : lys@kmou.ac.kr
* 정희원, yyung@kmou.ac.kr

02

국내 관련 법령 조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주요 분석
 - 제1장 총칙(제1조 ~ 제10조): 유선 및 도선, 혼합형 유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한다.
 - 제2장 유선사업(제11조 ~ 제13조): 송선정원 및 안전운항과 승객의 준수사항을 규정한다.
 - 제3장 도선사업(제14조 ~ 제19조): 송선, 적재 한계 및 안전운항과 승객의 준수사항을 규정한다.
 -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제20조 ~ 제31조): 안전관리(장비, 훈련 등) 및 검사사항 등을 규정한다.
 - 제5장 보칙(제32조 ~ 제38조), 제6장 벌칙(제39조 ~ 제43조)
-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관련
 - 제20조 안전검사, 제26조 검사 등: 관할 관청에서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선박직원법, 선원법, 해사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도선)에 대하여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02

국내 관련 법령 조사

유선(도선)의 운항 특성

- 유선(도선)은 출항지와 도착지가 같으며 동일 인원이 승선하며, 부산항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이 사전에 지정된 장소를 출항하여 허가된 지정 구역을 유람 후 다시 동일장소로 복귀하는 형태로 여객선과 다르게 승객의 경우 출항 전 안전교육을 시행하면 운항 종료시까지 동일 인원이 승선하고 있다.



02

국내 관련 법령 조사

법령에 따른 선박 분류

- 선박의 분류는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등에 규정하고 있다.

분류	정의	관련법	비고
유선	5톤이상(5톤미만인 경우 승객 13인 이상 선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해수면 주로 50톤 미만
도선	5톤이상(5톤미만인 경우 승객 13인 이상 선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해수면 주로 50톤 미만
여객선	13인 이상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	선박안전법	해운법 여객운송사업
소형선박	길이 12m 미만 선박	선박안전법	
선박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	선박안전법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수상항공기, 수면비행선박 포함)	해사안전법	
수상레저기구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종, 키약, 카누, 워터슬라이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모토, 그밖에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항방식을 가진 것	수상레저안전법	
동력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레프트	수상레저안전법	

03

선박관리평가 기준

선박관리평가

- 유선(도선)의 선박관리 평가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선령이 25년 초과된 선박은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관리평가 기준'의 선박관리평가단으로 부터 선박관리평가를 점검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양경찰청의 주관아래 시행되고 있다.
- 다음과 같이 선박의 정비, 사고 예방, 여객 편의를 중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 선박정비 및 검사
 - 연간 정비 계획의 적정성, 이행상태 및 그 기록 유지
 - 선박검사계획, 이행 실적 및 기록 유지
- 해양사고 예방관리
 - 해양사고 예방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시행 및 그 기록 유지
 -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도
 - 안전저해요인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시정조치의 적절성
- 편의시설관리
 - 여객구역 시설 및 위생시설의 청결도
 - 여객구역의 쾌적성

02

국내 관련 법령 조사

유선(도선)의 법적 지위

- 유선(도선)은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으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여객선은 출발지와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며, 이등으로 인하여 출항지로 복귀시 승객이 바뀐다는 특성이 있으며, 유선(도선)의 경우 규정, 관광 등의 유락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출항지와 도착지가 같으며 동일 인원이 승선한다.
- 여객선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유도선은 행정안전부 관할로 관할 시장 등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안전관리는 해양경찰청이 담당하고 있음
- 국내 유람선의 경우 당일 운항 유람선으로 2~3시간 이내 운항하며, 지역 내 해안 또는 섬을 관항하는 지역 운항이 대부분이다.

분류	관리기관	관련법	항행 특성 및 목적	항행 구역	선박직원	승무자격
유선(도선)	해양수산부	해운법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인명 운송	지정 항로	선장 및 기관장	5급항해사이상 6급기관사이상
여객선	관할 지자체장 해양경찰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출발지와 목적지 동일	지정 구역 (2~3시간 이내)	선장 및 기관장	6급항해사이상 6급기관사이상

03

선박관리평가 기준

선박관리평가

- 여객선 중 내항 여객선의 경우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선박관리평가를 점검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해양수산청의 주관아래 시행되고 있다.
- 유선(도선)의 기준과 세부적인 배경에는 차이가 있으나, 매우 유사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 선박정비
 - 연간 정비 계획의 적정성, 이행상태 및 그 기록 유지
 - 안전저해요인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시정조치의 적절성
- 편의시설관리
 - 여객구역 시설 및 위생시설의 청결도
 - 여객구역의 쾌적성

03

선박관리평가 기준

선박관리평가 개선방안

- 유선(도선)의 선박관리 평가는 실질적인 유선(도선)의 안전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유선(도선)은 내항 여객선과 다르게 동일한 출발지와 목적지를 통항하고 있으며, 상세 정비가 이루어질수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선박관리 평가는 여객의 안전과 편의를 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평가 항목으로 여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안전관리로 안전 저해요인 발생 시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안전장구의 적정 비치 및 유지관리, 승무원의 법정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여객의 안전 향상을 유도하고,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정결도 관리를 평가하여야 한다.

구분	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안전	선박정비	선박정비 기록 및 이행상태	기록 확인
	안전관리	안전저해요인 발생 시 기록 유지 안전장구 적정 비치 및 유지관리 승무원 법정 안전교육 이수	기록 확인, 현장 점검
	편의시설관리	여객시설 및 위생시설의 정결도	현장 점검
편의	승객 편의	승객 편의 증진 방안	기록 확인
	정결도	승객 편의 증진 방안	현장 점검

- 선박정비
 - 선박 정비 기록 및 이행상태
- 안전관리
 - 안전저해요인 발생 시 기록 유지
 - 안전장구 적정 비치 및 유지관리
 - 승무원 법정 안전교육 이수
- 편의시설관리
 - 여객시설 및 위생시설의 정결도

04

결론

유선(도선) 현황조사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유선(도선)이 규정되며,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유선(도선)과 여객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객선은 출항지와 목적지간의 여객운송이며, 출항지로 귀항 시 여객의 변화가 발생하며, 여객의 변화에 대응한 안전관리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 유선(도선)의 경우 출항지와 목적지가 동일하며, 동일한 여객이 유람의 목적으로 승선하며, 출항시 동일한 여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유선(도선)의 경우 지역 내의 유람을 목적으로 하며, 2~3시간 이내의 구역을 항해하고 있다.

국내 연안 Ro-Ro 선박 고박 현황

- 선박관리평가 기준
- 유선(도선)은 25년이 초과된 노후 선박에 대하여 선박관리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객선의 경우 내항선박에 대한 선박관리평가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유선(도선)의 경우 그 목적과 항행 특성을 고려하여, 선박관리는 여객의 안전과 편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여객 안전을 위한 안전장구 비치 및 유지관리, 승무원의 법정교육 이수, 여객의 편의(시설 정결도)등 유선의 목적과 특성에 맞도록 관리 평가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